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7. 9(화) 15: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5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2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26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26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3-27-063)

####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공단 등 10개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6월에 재무, 영업, 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월에 허가를 심사하였습니다. 허가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위원단이 위치정보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총 7개 법인 「교통안전공단,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주), (주)넷케이티아이, (주)예공, (주)아이온뱅크, (주)케이엘네트웍스」를 적극적으로 판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정적 능력이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 3개의 법인 「(주)와이더넷, (주)스타소프트, (주)구름소프트」를 제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스타소프트와 (주)구름소프트는 총점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하였습니다. 10개 신청법인의 세부심사 기준별 평가점수 등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허가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붙임>자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기준점수가 70점으로 되어 있지요?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중에 턱걸이가 된 K업체를 보면 재정능력과 타당성을 합쳐서 6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계획서를 낼 때 전부 손으로 쓰는 것이고, 재정적인 능력은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능력이 상당히 위태롭게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보니까 자본금은 1억 2,000만원에 부채 15억원, 매출은 24억원에 영업이익은 1년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는 어린이 등·학교의 안심 알리미 서비스 관련 단말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위치정보라고 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상당히 재정능력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합격되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부실심사라든가 또 방통위 전체에 대한 신뢰에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사무국에서 그런 덤터기가 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유의하고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 정종기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위 벤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자본 규모보다는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잘 챙겨 봐야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서 어쨌든 저희가 심사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단 허가를 내주고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건 (2013-27-064)**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서면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의결주문입니다. '영어방송으로 허가된 수도권 부산, 광주 영어FM에 대하여 다국어 방송의 허용을 의결한다'입니다. 다국어방송 허용 시 아래와 같이 방송사항 및 허가조건을 변경한다. 변경되는 허가조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방송프로그램(단, 외국인 대상 한국어서비스 프로그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의 언어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함. 변경허가 시 제출한 다국어방송 편성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국어방송 편성비율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것. 다음으로 청취자위원회 구성시 외국인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구성할 것. 다만,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국어방송 허용 시 아래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취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영어 외의 방송하는 경우 기존 영어FM에서 방송하는 다국어 방송임을 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FM 허가 시 기존 권고사항이 있었었습니다. 기존의 권고사항은 취지대로 유지합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단에 있는 점선의 박스 안에 4가지 사항이 기존 권고사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기존 권고사항의 취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FM의 다국어방송 허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08년 5월 신규 영어FM 도입 기본계획이 의결됨으로써 영어FM에 대한 정책방안을 방통위가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08년 7월, 10월, 12월에 걸쳐 수도권, 광주, 부산 지역의 영어FM 신규 허가 의결이 있었고, 이후 '10년과 '11년에 걸쳐 재허가가 있었습니다. '12년 12월에 들어와서 영어FM 방송사에서는 중국어방송 허용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3년 5월까지 영어FM의 다국어방송 허용과 관련한 방송사 의견을 수렴했고, 오늘 그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든 정책방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허가조건 등 현재의 규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FM의 방송사항은 영어방송을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과 광고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언어에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허가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청취자위원회에는 외국인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허가조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국어방송 허용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봤습니다. 첫째가 청취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영어권 외국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시청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201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계 5%, 중국계 57%, 일본계가 3%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허용 필요성으로는 저희들은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영어를 포함해서 다국어방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규 외국어방송의 수요에 따른 새로운 방송 도입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영어 외에도 다국어방송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규 외국어방송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허가된 영어FM를 활성화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신규 외국어방송 도입과 관

런해서 물리적인 주파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국어방송 허용에 따르는 고려사항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편성비율에 대한 허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지역별 다국어방송 수요를 고려해서 탄력적인 운영과 방송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어에 대한 편성비율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국어방송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실시하고, 청취자위원회 구성 시에는 방송되는 외국어별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해서 청취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허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국어방송의 허용을 위해서는 방송사항 및 허가조건에 규정된 부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영어방송으로 제한되어 있는 방송사항과 허가조건을 다국어방송이 가능하도록 완화해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변경허가 시 제출한 다국어방송 편성계획을 잘 이행하도록 하고, 편성비율이나 제출한 편성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취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변경과 권고사항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청취자위원회 구성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의 청취자가 혼란스러울 있기 때문에 영어 외의 언어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어FM에서 방송되는 다국어방송임을 고지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권고사항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 내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생활정보방송 제공 등과 같은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기타 동 정책방안을 의결하고, 향후 추진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시기는 오늘 위원회의 정책방안을 새롭게 의결해 주시면 준비된 방송사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변경허가 신청 시 편성계획과 근거, 청취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다국어방송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한 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다국어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드린 영어FM의 다국어방송 허용 정책방안을 의결해 주시면 의결 직후부터 각 영어FM 방송사별로 변경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허가 신청을 받고 여기에 따라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조건이나 신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발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14년부터는 다국어방송 이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인 정책방안이 <붙임>으로 있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내용 중에 영어 이외의 '외국어방송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당초의 표현이 있었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과 '다국어방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표현상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영어로 제한되어 있던 영어FM의 언어를 모든 외국어로 확대한다,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어FM이 이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FM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도 기존 틀은 영어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현재 방송사업자들의 준비상황이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면 1년 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보고서에 제출된 대로 만약 의결해 주시면 가을 개편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당장 가을에는 2시간 내외의 중국어방송 편성부터 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계획은 있지만 저희들의 정책방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푸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문화시대로 접어드니까 이것은 바람직하고 굉장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허가조건 첫 번째 제일 밑에 보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승인할 경우 뒤에 보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 맞느냐, 혹시 신고제로 하면 규제 완화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만약에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다국어방송 편성계획 자체는 제출하게 됩니다. 편성계획이 통상의 사업허가 받을 때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약속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주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통상 규제기관의 변경허가를 승인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율이라는 의미에서는 제출하는 편성계획에서 사업자들이 충분히 사업자의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만 방통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도가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홍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같은 동감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바꾸는 것을 승인 받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중간에 중요하게 바꾸더라도 신고해서 상황 변경만 받는 것으로 하지, 승인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이것은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를 5%만 하고, 중국어를 50%로 한다, 그것

을 나중에 중국어를 70%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자율로 만들어 놓고 또 승인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모순된 것 같으니까 중요한 변경 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파악하면 되지, 승인이라는 표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영어FM에서 언어에 제한 없는 외국어 사용, 외국어로 방송하는 근본적인 정책 변경이고 그것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언어의 내용은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자율로 맡기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상 허가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율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허가받을 당시 주요한 사항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만 해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의 핵심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취지였고, 다른 허가사업자에 부과되었던 그런 조건이어서 그 차원에서 부과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 경우만 특별히 부과한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뜻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것을 보는 취지라는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현실적으로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구체적인 실태파악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장 승인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국어와 외국어와 법적 개념이 다른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다국어, 외국어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국어'라는 표현은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저희를 질책하셨는데, 현재 영어FM으로 허가가 나서 영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외국어 허용이라는 표현을 쓰면 영어는 이미 허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 허용이라는 것이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어 외에 다국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검토했겠지만 기본적인 외국어 관련 방송의 정책 대전환을 논의하면 영어FM이라는 개념이 외국어FM 또는 다국어FM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어FM이 방송법 개념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영어FM이 법률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증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명칭 자체도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당신들이 생각할 때 편성계획으로 봤을 때 주가 영어가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일반적인 용어 외국어FM으로 신청하면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런 변경 문제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전환 정책의 첫 시발점이면 전체적으로 부속되는 흐름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논의까지 가서 마무리를 한 덩어리로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우리가 그동안 규제가 많았는데 좌우지간 대담하게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 교통포항 FM방송국 (2013-27-065)**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포항 FM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포항 FM방송국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다만, 신규 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통포항 FM방송국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모 박스 안입니다.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 두 번째, 기존 무선국의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할 것. 네 번째로 보조국 폐지에 따른 편경되는 방송사항을 청취자에게 사전고지하는 등 청취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할 것. 다음으로 재정, 인력 등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할 것. 방송프

로그랩 편성, 제작 등 지역성 구현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할 것. 방송국 조기 개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허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할 것. 마지막입니다. 연도별 소요자금 확보 등 세부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관계기관과 협의 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포항 FM방송국에 대해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매체다양화, 라디오 디지털 전환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신규 방송국이 설립되는 지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허가신청 법인현황을 <표>로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신청법인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방송구역은 포항시 일원과 경주, 영덕군 일부가 되겠습니다. 방송국 소재지는 경북 포항시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부산 등 모두 9개의 교통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27일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5월 28일~6월 17일에 걸쳐 청취자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의 내용은 모두 12건 400여명이 제시를 했는데, 대체로 내용이 교통포항방송국 조기 설립을 원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6월 19일에 걸쳐 미래부의 기술심사가 있었고, 7월 2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으로 홍성규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명단은 <표>에 보시는 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이러한 심사는 전문가 심사의 심사평가 결과 모두 675.7점을 획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허가'를 의결하기로 했고, 650점 미만에 대해서는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각 8개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과 그 심사결과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점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단에서는 본 심사가 기존 방송사업자가 허가신청했다는 점에서 방송국 운영이나 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가 없고, 또한 포항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교통정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다만, 신규 방송국 설립에 따르는 청취자 보호나 경영효율성 제고, 지역성 구현 등을 위해 허가조건 부과가 필요하고, 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 허가에 필요한 법적, 기술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 기준점수, 허가의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미래부의 기술심사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결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해서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취자 접수의견 등을 반영해서 동 사항을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은 의결주문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7월 중에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심사평가 항목과 배점, 심사위원단의 심사의견서,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의 방송국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이고, 교통안전공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첫 번째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 건에 대해서 3번 만에 붙은 교통안전공단과 지금 교통방송을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과 차이가 있는데 공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공단이라 함은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의 소속으로 특정하게 민간의 지분이 없는 소속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전적으로 소유 지분 관계는 경찰청이네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예산도 공단의 지원을 받고 편성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걱정되는 것이 기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포항 영역도 커버리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허가해 준 것인데, 그러면 다른 지역, 기존에 방송설비나 장비나 시설이 없는 경우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일단 물리적인 주파수 환경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포항이 유력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으로 주파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측면이고, 다른 지역도 교통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온다면 물리적인 주파수가 가능하다면 그것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보조국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일단 신청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공단 성격을 질문했던 것이 유사하게 지자체나 그다음에 경찰청..., 우리나라에서 서울 교통방송은 서울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서울 지역 외의 교통방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MBC, 포항KBS 기존의 지상파가 존재하는데, 기존에 지상

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 거제, 고성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자체가 우리도 라디오방송국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면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 그 지역이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신청하면 주파수를 찾아서 허가해 주어야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근거가 이 문제입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라디오방송국에서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예를 들었습니다. 제 고향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중요한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라디오방송국 중에서 교통방송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방송국이라는 특수방송국, 특정 분야의 방송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방송국은 이것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방송수요가 충분한지 여부가 있으면 정부가 그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전반적으로 이번에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어차피 교통방송이 여기 저기 할 텐데 벌써 이미 10개가 됐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은 다른 지역방송도 마찬가지로 2가지 가치가 공존해야 하는데, 하나는 교통방송이라는 지역적 수요, 교통방송이라는 특수성에 지역적 수요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수요를 고려한 가능하면 잘게 가는 것이 좋겠지만 기본적인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광역화해야 한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부분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장 하시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안은 잘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포항방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는 경북방송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이나 또는 라디오의 지역방송도 강원방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주방송, 또는 춘천방송 이렇게 key station이 있는 도시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하는데, 경북이라고 하면 포항방송은 대개 포항과 인접 산맥 동해안 쪽만 해당될 것 같은데 경북이라면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으로 나중에 홍성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북 서쪽에서 대구 가는 교통방송을 세운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것도 포함되는 것처럼 이상하

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명칭도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舊 방통위 때부터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적 부분을 지침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방송국 명칭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주소가 위치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지적하신 대로 경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원칙에 맞게 교통포항FM으로 허가하도록 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 관련해서 참고로 경북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이 포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성인채널 무단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성인채널 무단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성인채널 무단송출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3년 5월 2일 국회에서 성인채널 무단송출과 관련해서 청소년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통위에 SO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13년 5월 14일~5월 16일에 걸쳐 당시 지적이 주로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티브로드 본사 및 티브로드 기남방송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5월과 6월에 걸쳐 성인채널과 관련해서 유료방송사업자 9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또 자료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6월 21일~7월 3일에 걸쳐 이러한 자료제출과 분석을 했고 또 현장점검도 티브로드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좀 더 중요하게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인채널 가입자 규모나 그동안 현장점검과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민원 분석 결과, 또 사업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주요 사업자를 선별해서 현장점검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 현장점검 대상사업자로 MSO로는 CJ헬로비전과 C&M, IPTV 사업자 3사 모두, KT스카이라이프와 개별 SO에는 울산중앙방송과 영서방송 등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성인채널의 일반현황과 가입자 현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성인채널은 현재 스파이스·미드나잇·비키·허니.펜트하우스 등 5개의 성인 유료채널이 유료 방송사별로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시간대에는 이러한 성인 유료채널이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3년 4월 현재 성인채널 가입자는 68만 4,000명으로 집계되어서 유료가입자 2,387만 9,000명의 약 2.86% 수준입니다. 가입자 현황을 각 SO 플랫폼과 성인채널별로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채널 가입자나 성인채널의 시청에 따른 민원현황을 보시면 '12년부터 '13년 5월 26일까지 분석을 했는데, 성인채널 관련 민원은 모두 2,459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료방송 민원 1,300만 건의 0.02% 수준, 그러니까 유료가입자 비율보다는 민원 제기율이 조금 낮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민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결과는 먼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로 민원과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태 점검과 사업자 제출자료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가입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성인채널을 송출하는 사례, 이것이 방송사업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지행위 유형, 방송법과 IPTV법에 성인채널 무단송출과 관련된 금지행위 유형은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먼저 방송법에 금지행위의 유형, 방송법 85조의2에 따라 시행령 제63조의5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보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IPTV법에서도 법과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 및 이용약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 분석 결과입니다. 민원의 주 내용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가입을 부인한다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뿐만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채널에 무료판촉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판촉 행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유료로 전환할 때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동의 없이 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민원에 대해 사업자들은 요금을 조금 조정해 준다거나 환급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런 조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약관을 분석했습니다. 이용약관과 관련해서 티브로드·C&M, 푸른·울산중앙방송의 경우에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었고, 또 일부 사업자는 약관의 문구가 불명확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위단에 참고<표>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제가 보고드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진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환, 해지 등의 의사를 확인

해야 한다고 하고 단서로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연장 및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이용약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나 사업자와의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점검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개선토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미래부에는 사업자가 약관 신고 시 이러한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코자 합니다. 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 약관 승인)를 보면 유료방송의 약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시장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자 이용약관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유료전환 관련 이용약관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회에서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 성인인증도 안 됐는데 또는 가입도 안 됐는데 화면이 떠서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교묘하게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위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다음 성인인증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보여주는 첫 화면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종원 방송시장조사과장

-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방통위는 금지행위 관련 부분을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래부 소관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와 계속 협의를 했고, 사업자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미래부, 방통위 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채널 편성에 대해 권고할 수 없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권고는 행정지도 차원이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집 같은 경우 지상파와 투니버스 만화영화 사이에 이 채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드르륵 하다가 거기에서 탕탕탕 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걸리고 넘어갑니다. 이 시간대에 딱 정지가 되어 있으면 사진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널을 재핑하면서 충분히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상파와 투니버스 같은 만화영화 뒤쪽으로 채널을 편성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널편성권에 대해 감 놔라, 팔 놔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지적도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있어서 채널편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들을 사업자들에게 한 번 정리해서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넘겨 달라, 그리고 그쪽으로 편성해 달라는 것은 행정지도 개념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이번 점검결과 이런 부분을 점검했고 결과를 통보할 것이고, 오늘 이 보고하면서 이런 의견도 제시됐으니까 그런 내용을 알리고 통보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상임위원인데 SO에 전화해서 이야기해도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받아버리면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헤아려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종합편성·보도전문PP '12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를 말씀드리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PP가 '13년 1월 31일까지 방통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했는데 '12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11년 3월~5월에 걸쳐 종합편성PP 4개사와 보도전문PP 뉴스Y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이 당시 승인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3년 1월 31일 종편 및 보도전문PP는 '12년도의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했고, '13년 3월 18일 그 이행실적에 대한 보정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이행실적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시 6월 25일 그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법률자문도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종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편PP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편성토록 승인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실적 점검 대상입니다. 이것은 종편·보도전문PP 모두에 해당하는데,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7개 이행항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이나 재방비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과 연구개발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방송장비 국산화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이 주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방송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이나 장애인 지원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로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개의 종편사 및 보도PP사업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먼저 종편PP의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제작 편성비율은 모든 사업자가 잘 준수했습니다. 다만, 외주제작 편성비율의 경우에는 TV조선이 준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다 준수했습니다. TV조선은 하반기에 <표>로 보시는 대로 제시한 35%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편·보도PP의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입니다. 실현방안의 주요 세부이행 계획 중에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도입한다든가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겠다든가 이러한 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분야별 편성비율과 관련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TV조선, 채널A, MBN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재방비율은 보도PP는 성격상 그렇습니다. 뉴스Y를 제외한 종편은 전반적으로 재방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과 연구개발 방안은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계획보다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 등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되며, 특히 콘텐츠 투자액 이 부분은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구매를 포함하는 콘텐츠 투자액은 5개사가 모두 3,45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계획대비 47.4%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균형 발

전방안, 다섯 번째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여섯 번째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일곱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전문가평가단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방송사업자별로 대체적인 총평을 토대로 한 방송사업자별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TV조선을 말씀드리면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는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제작 비율과 외주제작 주 시청시간대 편성비율은 잘 지켜졌습니다. 다만, '12년 하반기의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승인조건은 35%였습니다만 TV조선은 32.3%에 그쳐 약 2.7%를 미달했습니다. 다음 TV조선의 사업계획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는 먼저 첫 번째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과 관련해서는 세부이행 계획 가운데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편성비율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로 보시는 대로 사업계획서상으로 TV조선은 보도 부분의 편성비율을 약 24.8% 제시했는데 실제 이행에는 35.9%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방비율이 56.2%로 사업계획의 26.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또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액이 1,575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604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미달됐습니다. 나머지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JTBC입니다. 국내제작과 외주제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는 총평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 비율을 잘 준수했습니다. 7개 항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관련해서는 분야별 편성비율에서 JTBC는 보도나 교양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오히려 사업계획 대비 낮았습니다. 특히 보도를 보시면 사업계획에서 23.7%를 제시했습니다만 실제 보도는 20.2%에 그쳤습니다. 다만, 재방비율이 58.99%로 사업계획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등과 같은 부분은 총평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콘텐츠 투자액이 1,129억원으로 원래 계획 2,196억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총평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채널A입니다. 총평 보고대로 국내제작이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잘 준수를 했습니다. 7개 사업계획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된 분야에서 먼저 편성비율에서 교양과 오락의 비율이 낮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계획에서는 23.6%였습니다만 34.1%로 높았고, 재방비율이 5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역시 총평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콘텐츠 투자액이 사업계획으로 1,804억원이었습니다만 985억원으로 미흡했고, 나머지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은 총평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MBN입니다. MBN의 국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역시 그 비율을 잘 준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7개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는 보도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는 22.7%입니다만 이행실적에는 51.5%로 높게 나왔고, 재방비율도 40%로 사업계획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장비 산업 기여 계획 역시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행실적이 미흡했고, 콘텐츠 투자액은 1,66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711억원에 그쳤습니다. 기타 네 번째 항목에서 일곱 번째 항목은 총평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PP 뉴스Y입니다. 뉴스Y는 사업계획서 주요 7개 항목 부분만이 해당됩니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는 세부 이행계획 가운데 편성위원회 운영

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종편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재방비율은 사업계획서를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이행실적이 미흡했고, 콘텐츠 투자액 역시 사업계획에 못 미쳤습니다.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잘 이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승인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미흡에 대한 조치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승인조건에 구체적으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도입의 목표가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외주제작의 편성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편성비율을 잘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의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의 세부 이행계획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의 유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책임 부분은 사업 초반에 이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서 재방프로그램, 재방이라는 수치나 재방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을 취지로 하는 종편 도입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종편의 특성이 보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도전문PP와 차별된 방송분야를 편성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 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방안의 미흡과 관련해서는 통상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는 사업실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지난 1년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 또는 광고 여건, 미디어 시장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고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항목 중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은 종편 도입 목표인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핵심적인 해당사항이고, 또한 중대한 상황변화에 따른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규제기관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변경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러한 기본 조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승인조건 미이행 또는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꼭 보고드렸습시다만 다시 한 번 요약드리면 전체 외주제작 편성비율,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구성, 공정보도특별위원회 도입, 편성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이 미흡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인조건의 이행의 미흡으로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부과코자 하고 그 대상사업자는 종편4사와 보도PP 전 사업자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행촉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대로 국산 방송장비 산업 기여나 연구개발, 콘텐츠 투자계획은 시정명령 내용에 있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이나 방송분야별 편성비율 미흡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행촉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역시 대상사업자는 종편4사와 보도PP 1사를 포함한 전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물론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다소 변경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접수해 주시면 7월 중에 이행촉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면 현재 계획으로는 8월경에 시정명령을 하고, 8월 이른 시간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8월 말 사업자들에게 이행촉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접수코자 합니다. 일정은 다소 변경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으로 승인조건 중 사업계획서 이행 관련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전체적으로 종편이 출범한 이후에 최초의 자가 점검 같은 것인데, 종편이 안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 2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따기만 하면 뭐든 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도 발전시키고, 국산장비 R&D도 지원하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지금 점검해 놓은 결과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콘텐츠의 산업 기여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치의 47% 밖에 못 했습니다' 스스로 공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방비율은 높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작비,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에 재탕, 3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던 공약은 값싼 정치평론가들 모아놓고 보도프로그램을 위장한 내용을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추진력으로 정치평론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종편의 경영현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시장, 미디어 전체가 그렇지만 적분의 시대에서 미분의 시대로 가는 그런 미디어 상황에서 종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전망을 밝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광고시장은 어떤가? 단기적으로 경제야 한없이 나쁘지만 향후의 광고시장도 그렇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선정하고 정치에 휘말린 판단으로 자업자득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정명령을 해서 어떻게든 행정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은 도리 없는 일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방송정책국장,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 YTN에서 봤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오늘 아침에 YTN를 보다가 이것이 미디어 간에 헐뜯기이고 충돌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리서치뷰라는데 한 1,000명 여론조사를 했더니 종편에 대한 불신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49%, 그리고 종편 재승인 심사해서 아예 없애라고 하는 사람이 41.7%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려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첫째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적인 측면에서 정말 어지러운 종편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방통위의 책임이고 우리

의 자업자득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시정명령을 통해 연말까지 시정조치가 잘되어서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또 완벽을 기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종편이 3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글로벌 미디어그룹 등장, 콘텐츠의 세계시장 경쟁력 증진 이 3가지의 명분을 가지고 종편을 밀어붙였는데 이 3가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공정방송, 품격 있는 방송을 유도하기 위해 줄지에 심각한 규제의 대상으로 전략해 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결과는 참담하다는 표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종편4사가 다 제작투자액이 반 토막 이하 정도인데, 2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자기들이 처음에 투자계획을 낼 때 한두 개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과감하게 써냈다가 4개가 되면서 시장에 적응 못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왔던 것이지요. 스스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의지 자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꺾였던 이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정부정책의 실패와 종편의 과욕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항목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평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들을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로 해서 나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재평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현재 우리가 재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이행평가 속에서 재승인의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큰 주제 속에서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평가내용을 그렇게 치밀하게 논의했고, 그다음에 주요 3대 과제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평가내용에 다 넣었는데 이러한 큰 덩어리 핵심주제들이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이쪽 부분으로 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치밀하게 봐야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고서에서 7개의 요목들 중에 1번 요목이 가장 심각해졌습니다. 첫 번째 보도·교양·오락이라는 장르 구분들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와 교양과 오락은 사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오락과 관련해서만 편성 규제가 있었고 예전에 오락을 많이 하려고 '쇼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교양 영역의 장르를 확대시키고 오락 영역의 장르가 적은 것처럼 보이려고 지상파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쇼양이라는 장르가 있느냐고 비하시킨 적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도·교양·오락이라는 장르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락은 기본적으로 예능 플러스 드라마를 오락이라고 하고, 교양은 시사와 일반 자연 이러한 부분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 23.7%, 교양 44.8%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이고, 우리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상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더 잘게 쪼개서 요목화를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단지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부분을 보는 의미도 있지만 재승인을 위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을 던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 주고, 그다음에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방송특별위원회,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 즉 공정방송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신들이 제안했던 부분들

에 있어서 크게 2가지가 지적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보고를 받고 오전에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훑어 봤는데, 구성이 안 돼도 아주 형식적으로 자기 회사 사람들 한 대여섯 명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체 위원회가 있고 외부위원들이 결합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속기록들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그다음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말 했는지, 허위로 했다고 신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만들었다고 하는 곳이라도 정확하게 회의록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허위보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방비율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 그다음에 보도 과잉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 장르별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지금 말 그대로 우리는 보도전문 채널은 뉴스Y에만 준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종합편성을 하라고 했으면 대표적인 장르인 보도와 교양과 오락이라는 장르의 유지와 안정성, 그러면서 그 안정성이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들이 바로 콘텐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이러한 일련의 유기적 관련들 속에서 문제를 봐주고 교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보자, 지금 방대한 양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방송정책국에서 많이 생고생했다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기왕 고생하는 것 좀 더 요목을 더 잘게 쪼개서 기존의 정책적 목표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방송환경 매체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을 봐 주어야 실질적으로 종편과 더불어서 전체 유료방송PP들이 생존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고 심사하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 홍성규 상임위원

- 질문을 다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평가나 여론이 있었는데 이행실적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대체로 맞는다,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는데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곧 재승인을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이행실적이 기본자료가 될 텐데 두 분이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도편성이 아주 과다하다, 어딘가는 50% 이상 보도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도채널이지 이것이 종편이나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방비율이 아주 높다, 그래서 종편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있는데 매우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또 국산장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앞으로 있을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행정조치하고 이행각서를 받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어도 최소한 종편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반을 하나 꾸려서라도 방통위가 방향을 제시하자, 제시된 방향을 가지고 재승인에도 나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만, 물론 초기에 종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고민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방송이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행 실적점검, 또 다가오는 재승인을 계기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반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종편을 놓고 개인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정보공개만 해도 참여한 상임위원들 간에 반대의견들과 쟁점들이 존재했었는데, 이행점검 실적을 놓고 일치된 의견들을 보인다는 것이 현재 종편의 현주소라고 명확하게 의미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홍성규 위원 말씀하셨던 연구반을 구성하고 재승인 심사 앞까지 집중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해 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의 영역들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요목을 세분화해서 또 시정명령 부과할 것 있으면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승인까지 이 점검을 계속 해 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제가 아직 발언도 안 했는데 4명의 상임위원의 의견이 똑같다고 미리 양 위원께서 예단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평가가 종편이 출범한 이후 첫 연도에 대해 한 것이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물론 첫 번 자료를 가지고 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욕심껏 좀 더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매년 평가에 좀 더 보완해서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당초에 약속한 대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들이 의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물론 경기가 안 좋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방송사 내부에서도 그런 원인은 부분적으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재방비율이 높다든지, 보도가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빨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말도 많은 종편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도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아니고 제3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별도의 위원회나 검증반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우리가 제3자에게 의뢰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접수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중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토론과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폐 회

###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0분 폐회 】